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2019144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2. [redacted]시 [redacted]구
	3[redacted]시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redacted]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754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6968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18.(피고 1.에 대하여)
	2019. 11. 20.(피고 2.,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9. 12. 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134,019,318원 및 그 중 64,268,809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69,764,2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16,26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9. 4.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1,173,512,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 부터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redacted]시는 원고에게 261,453,009원 및 그 중 12,853,762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48,595,995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25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9.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5/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시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3. 제1의 가. 내지 다.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134,019,318원 및 그 중 64,268,809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69,764,2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16,26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2,231,354,787원 및 그 중 1,057,842,633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173,512,154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각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redacted]시는 원고에게 473,010,319원 및 그 중 224,411,072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248,595,995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25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2016. 10. 20.까지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자율의, 2016. 10. 21.부터 2017. 10.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① [redacted]구 [redacted]동 639 등 별지3 '[redacted]공공시설 토지' 기재 각 토지(이하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라고 한다), ② [redacted]구 [redacted] 5-32 등 별지4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및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012. 9. 25. 납부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라고 하고, 서구 공공시설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과세물건	구분	납부일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1년	[redacted]구청장	[redacted]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128,537,619	25,707,524
	[redacted]구청장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1. 9. 30.	2,115,685,267	423,114,621
	합계				2,244,222,886	448,822,145
2012년	[redacted]구청장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중 일부	수시	2012. 10. 16.	32,524	6,505[1]
	[redacted]구청장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139,468,494	27,893,699
	[redacted]구청장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정기	2012. 9. 25.	2,347,024,308	469,298,291
	합 계				2,486,525,326	497,198,495

1) 환송전판결에는 6,50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18.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6,50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다.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각 피고 [redacted]구, [redacted]시 [redacted]구에 귀속되었고, 지방교육세는 피고 인천광역시에 귀속되었다.

라. 한편,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는 2002. 7. 22. [redacted]역시 고시 제2002-168호로 도시계획시설(항만 : [redacted]항)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고,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는 별지4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및 별지5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012. 9. 25. 납부내역' 기재 각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에 항만, 녹지, 도로 등으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7, 10 내지 20호증, 을나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역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redacted]시 [redacted]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가 2011년 및 201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그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이러한 경감을 받기 위한 다른 부가적인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추후 집행이 완료되더라도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하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는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 집행이 이루어진 토지도 모두 포함됨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법문상 명확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그 법문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redacted]공공시설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지 아니한 부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동일한 귀속년도 및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 중 일부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된 경우라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선결문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판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고 그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은 해당 무효확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 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그 대상의 일부를 액수에 따라 분리·특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경조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일부 무효확인 및 이를 선결문제로 하여 위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2)]

따라서 피고 [redacted]시 [redacted]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 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에 2011. 9. 30. 128,537,619원, 2012. 9. 25. 139,468,494원, 2012. 10. 16. 32,524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는 원고에게 134,019,318원[= 64,268,809원(= 128,537,619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69,734,247원(= 139,468,494원 × 1/2) + 16,262원(= 32,524원 × 1/2)] 및 그 중 64,268,809원에 대하

2) 이 부분 인용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피고 인천광역시 서구는 환송 전 당심 2018. 5. 2.자 준비서면에서 서구 공공시설 토지 중 인천 서구 석남동 643-3 외 10필지에 관한 재산세 등이 이미 감면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8.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를 다투지 않으면서 위 주장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여는 2011. 9. 30.부터, 69,734,247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16,26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9.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당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전 당심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피고 [redacted]시 [redacted]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및 당연무효 여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가 2011년 및 201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하자는 앞서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하다.

나. 피고[redacted]시 [redacte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세 감면 신청 불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redacted]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감면 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감면 신청이 구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redacted]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률 적용 하자의 명백성'을 결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고(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이 사건 감경조항의 의미가 법문상 명확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감경조항이 규정하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판단에 해당한다. 환송 후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심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위와 같은 법률상 판단에 기속을 받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중복 감면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011년도 [redacted] 시 [redacted] 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은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redacted] 공공시설 토지는 2011년도 기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25만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감경조항에 의한 감면율 이상으로 위 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감경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 감면을 배제하는 위 감면조례 제18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부분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redacted]구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 전혀 하지 않았던 이 부분 주장을 환송 후 당심에서 비로소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가 환송판결 후인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재산세 중복 감면 배제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환송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점, 피고 인천광역시 [redacted]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반환되어야 할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행하여진 일종의 예비적 주장인 점,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redacted]구의 주장대로 과세대상의 분류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미 제출되어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달리 위 주장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시 [redacted]의 재산세 중복 감면 배제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다)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redacted]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redacted] 구세 감면조례(이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를 '감면조례'라고만 하고, 2011년도 과세기준일에 적용되는 감면조례를 '2011년도 감면조례'와 같이 지칭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과 이 사건 감경조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2011년도 감면조례 제18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본문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redacted]에 대한 감면 규정'은 감면조례에 2005. 7. 5. 신설되었다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항 제32호에 아래 ② 표 기재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개정규정은 위 대통령령 제22942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고, 2017. 12. 29.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은 유지되고 있다) 2012. 2. 20. 폐지될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개정되었다.

제·개정일	내용	비고
2005. 7. 5. 신설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5. 7. 1.부터 적용)	제22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2007. 2. 28. 전부개정 (2007. 2. 28. 시행)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2009. 5. 29. 개정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토지는 분리과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적용시한 2009. 12. 31.)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건축물은 50% 경감
2010. 1. 1. 전부개정 (적용시한 2010. 12. 31.)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토지는 분리과세, 건축물은 50% 경감
2010. 12. 23. 개정 (적용시한 2011. 12. 31.)	제11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한다.	토지는 분리과세, 건축물은 50% 경감
2012. 2. 20. 전부개정	폐지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5항 제32호

㉮ 감면조례가 2009. 5. 29. 개정되면서부터 ㉠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200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7. 11. 설립된 [redacted]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감면조례(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가 2008. 6. 30.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급격한 감면 폐지보다는 기존과 같이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나 제19, 20호증), 감면조례가 2009. 5. 29. 아래와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인천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던 점, 토지의 경우 건축물과 다르게 정률의 감경규정을 두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보다 많은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과 같은 정률의 감경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규정 형식 역시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입법자의 의도는 위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되 과세대상에 따라 그 감면의 방법만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 2010. 10.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3] 위 조항은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과 같이 과세대상의 구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을 달리하는 규정 역시 지방세 감면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조례에 의한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만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하여,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중 감면에 관한 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다.

<2010년도>

2010년도 감면조례
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4]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1년도>

3) 위 법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3조), 2010. 12. 23. 조례 제927호로 개정된 2011년도 감면조례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도 감면조례에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제9조가 적용되는데, 위 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이 위 조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4)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2011년도 감면조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012년도>

2012년도 감면조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어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 제2항으로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재까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유지.

<2017년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단서 생략)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현재까지 같은 취지의 규정 유지.

㉮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2010년도까지 적용되던 2010년도 감면조례는 제10조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라는 표제로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은 내용을 정하는 동시에 제22조로 "[redacted]에 대한 감면"이라는 표제로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였고, 제25조에는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위 각 조항 중 제10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기 위하여[5] 이 사건 감경조항이 포함된 제84조로 통합되었고, 피고 [redacted]구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redacted]에 관한 감면' 규정만이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에 남게 되었다. 위 각 조항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감경조항과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은 병렬적인 감경규정으로서 위 조례 제18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적용 대상인 '감면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위 ② 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2011년도 감면조례가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정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과 별도로 '인천항만공사에 관한 감면'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던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동일한 과세대상인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가 사권제한 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감경함과 동시에 원고가 사용하는 토지라는 이유로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중의 감경을 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등 참조). 중구 공공시설 토지는 2011년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25만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redacted]구는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중구 공공시설 토지 모두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1,000분의 2[같은 조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정한 100분의 50보다 더 높은 감경율이 이미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한 2011년도 부과처분에서 이미 이 사건 감경조항보다 감면율이 높은 2011년도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 전단에 의한 감경이 이루어진 이상 위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이 중복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이 부분 주장은 2011년도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피고 [redacted]구는 원고에게 2012년에 원고로부터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납부 받은 재산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구에 2012. 9. 25. 2,347,024,308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redacted]구는 원고에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1,173,512,154원(= 2,347,024,308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5. 피고 인천광역시에 관한 판단

피고[redacted]구, [redacted]구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및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경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점은 앞의 3.,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무효인 재산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지방교육세 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2012년에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지방교육세 중 50/10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및 [redacted]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2011. 9. 30. 25,707,524원을([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012. 9. 25. 497,191,990원(=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27,893,699원 + [redacted] 공공시설 토지 469,298,291원)을, 2012. 10. 16. 6,505원([redacted] 공공시설 토지)을 각 지방교육세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redacted]시는 원고에게 261,453,009원[= 12,853,762원(= 25,707,524원 × 1/2) + 248,595,995원(= 497,191,990원 × 1/2) + 3,252원(= 6,505원 × 1/2)] 및 그 중 12,853,762원에 대

6)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 피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될 경우 제1심에서 인정한 부당이득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당심 제5차 변론기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하여는 2011. 9. 30.부터, 248,595,995원에 대하여는 2012. 9. 25.부터, 3,252원에 대하여는 2012. 10.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20.까지는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기재 각 이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0. 21.부터 피고 [redacted]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박영주

판사 정석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별지1

환급가산금 이율 표

적용 시기	이자율	비고
2011. 4. 11. ~ 2012. 2. 29.	3.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 2조 (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2. 3. 1. ~ 2013. 2. 28.	4.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3. 3. 1. ~ 2014. 3. 13.	3.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4. 3. 14. ~ 2015. 3. 5.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5. 3. 6. ~ 2016. 3. 6.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6. 3. 7. ~ 2017. 3. 14.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7. 3. 15. ~ 2018. 3. 18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8. 3. 19. ~ 2019. 3. 19.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9. 3. 20. ~ 현재	2.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부칙 3조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별지2

관련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3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1.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98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12. 2. 20. 조례 제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1년도 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별지3

서구 공공시설 토지

2011. 9. 30.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1	석남동	639	-	86,083	17,217
2	석남동	640	-	10,968,132	2,193,626
3	석남동	644	-	2,223,838	444,768
4	석남동	645	-	18,275	3,655
5	석남동	646	-	3,757	751
6	석남동	652	-	700	140
7	석남동	653	-	29,445	5,889
8	석남동	653	2	3,706,971	741,394
9	원창동	396	-	15,450,990	3,090,198
10	원창동	396	3	19,197,513	3,839,503
11	원창동	396	6	10,120,574	2,024,115
12	원창동	396	7	19,253,468	3,850,694
13	원창동	396	9	3,890,180	778,036
14	원창동	396	10	8,782,826	1,756,565
15	원창동	396	12	16,130,260	3,226,052
16	원창동	396	13	9,984,278	1,996,856
17	원창동	396	14	835,746	167,149
18	원창동	396	16	3,135,450	627,090
19	원창동	396	17	3,648,358	729,672
20	원창동	397	-	151,926	30,385
21	원창동	397	1	217,977	43,595
22	원창동	397	3	180,568	36,114
23	원창동	397	4	90,079	18,016
24	원창동	397	5	161,542	32,308
25	원창동	397	7	14,278	2,855
26	원창동	397	8	71,753	14,351
27	원창동	397	10	127,246	25,449
28	원창동	397	15	25,346	5,069
29	원창동	397	16	30,060	6,012
합계				**128,537,619**	**25,707,52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2

2012. 9. 25.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1	석남동	639	-	93,139	18,628
2	석남동	640	-	11,857,440	2,371,488
3	석남동	644	-	2,408,134	481,627
4	석남동	645	-	19,773	3,955
5	석남동	646	-	4,065	813
6	석남동	652	-	757	151
7	석남동	653	-	31,859	6,372
8	석남동	653	2	4,008,701	801,740
9	원창동	396	-	16,708,020	3,341,604
10	원창동	396	3	20,806,243	4,161,249
11	원창동	396	6	10,966,385	2,193,277
12	원창동	396	7	20,862,548	4,172,510
13	원창동	396	9	4,205,600	841,120
14	원창동	396	10	9,516,838	1,903,368
15	원창동	396	12	17,478,322	3,495,664
16	원창동	396	13	10,784,206	2,156,841
17	원창동	396	14	902,705	180,541
18	원창동	396	16	3,397,490	679,498
19	원창동	396	17	3,953,264	790,653
20	원창동	397	-	164,379	32,876
21	원창동	397	1	505,456	101,091
22	원창동	397	3	262,741	52,548
23	원창동	397	4	97,463	19,493
24	원창동	397	5	174,783	34,957
25	원창동	397	7	15,449	3,090
26	원창동	397	8	77,634	15,527
27	원창동	397	10	137,676	27,535
28	원창동	397	15	27,424	5,485
합계				**139,468,494**	**27,893,699**

2012. 10. 16. 납부내역

순번	주소	본번	부번	재산세액(원)	지방교육세(원)
29	원창동	397	16	32,524	6,505
합계				**32,524**	**6,505**